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3호, 2024. 1. 30. 공포, 2024. 5.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일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참조 : 광역교통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찬성·반대	이 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온라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6, Fax 044-868-83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